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4. 25.

종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3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4. 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김재형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내에서 사업시행자 및 5년간 입점한 상인이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지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개정
(안 제12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5년간 입점한 상인(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96. 12. 30.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자구를 정리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제도가 '92. 6. 1일부터 '96. 1. 4일까지 운영되었고, '96. 1. 5일부터는 사용승인제도로 변경되었기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문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착오를 유발할 가능성을 예제하므로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의2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암동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는 '97. 12.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

제출년월일: 1997.

제출자: 마포구청장

1. 提案理由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감면조례 중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제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 및 5년간 입점한 상인이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 “사용검사일” 을 “사용승인일”로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개정(안 제12조 제1항)
-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 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신설(안 제15조의2)
- ◇ 제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5년간 입점한 상인(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신설(안 제15조의3)

3. 關係法令

- ◇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 제9조

4. 參考事項

가. 예 산: 별도조치 필요없음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1997-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
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
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다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
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하며,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지 50을 경감하고,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사용승인일까지</p> <p>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p> <p>사용승인일로부터</p>

(2)(생략)

(신설)

제15조의2(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 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 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신설)

제15조의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

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준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